
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5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3.

발 의 자 : 서명옥 · 김은혜 · 김기웅  
임이자 · 서범수 · 이종배  
이헌승 · 고동진 · 권영세  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(제64조),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,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만이 열거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인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이행 명령 위반시의 제재로 출국금지, 운전면허 정지, 명단 공개 등도 규정하고 있으므로, 이 역시 고지 대상에 포함시켜 심리

적 강제를 통한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국 금지, 운전면허 정지, 명단 공개 등의 제재들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 (안 제64조).

##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2항 중 “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, “고지하여야”를 “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고지는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1.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
2. 제68조에 따른 감치. 이 경우 이행 명령이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.
3.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4제1항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국의 금지
4.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

5.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이행명령 사건에도 적용한다.

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고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3.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4제1항 및 「출입국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국의 금지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4.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 및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처분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5.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</p>